협 약 서

대구대학교총장(이하 갑)과 대구덕희학교장(이하 을, 을은 강당 사용권에 대해 대구광명학교, 대구영화학교, 대구보명학교, 대구보건학교를 대표한다.)은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288번지 內 대강당의 사용 및 해당 건물의 증축·개축·대수선·리모델링(이하 리모델링)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.

1. 대상 재산의 표시

– 소유자 : 영광학원, 관리자: 대구대학교

구 분	소 재 지	지 목	층수	면 적(㎡)	비 고
토 지	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288	학교용지		946	
건 물	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288	–	지하1층, 지상3층	건축면적 946 연면적 3,218	1982년 준공

2. 협약 내용

제 1 조(**협약의 목적**) 위 1.항에 표시된 토지 및 건물(이하 강당)에 대하여 특수학교 학생들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및 급식 편의 제공을 위해 갑과 을 간에 사용 및 리모델링 등의 조건을 정하여 쌍방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협약하기로 한다.

제 2 조(**사용 용도**) ① 강당은 리모델링 후 학교밥상(급식소) 및 강당·체육관의 용도로 사용한다.

② 갑과 을은 필요한 경우 상호 동의하에 강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.

제 3 조(**사용권**) ① 갑은 을에게 2048년 7월 2일(30년)자까지 강당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. 단, 을은 갑의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당을 공동 사용한다.

② 권리 부여 기간 만료 후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.

제 4 조(**사용권 부여에 따른 대가**) 을은 제2조의 사용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도록 강당을 리모델링해야 하며.(공사 금액 20억원 이상)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.

제 5 조(**민원 및 허가 등**) 갑과 을은 강당의 리모델링과 관련한 민원에 공동 대응하고 을은 인허가, 승인 등을 책임지며, 사용 기간에 발생하는 강당과 관련된 민원에 대응한다.

제 6 조(**양도 및 전대 금지**) 갑과 을은 서면에 의한 상호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강당 사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.

제 7 조(**증축 등**) 갑과 을은 서면에 의한 상호 동의 없이는 강당·체육관의 리모델링 또

는 부속물의 설치 및 변경행위를 하지 못한다.

제 8 조(화재보험 및 안전조치) 갑과 을은 공동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을은 전기·가스 및 화재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한 자체 소방기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에 대한 안전유무를 수시로 점검하고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 9 조(공공요금) 공공요금의 부담은 사용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 10 조(협약의 해지) 갑과 을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 만료 전이라도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① 특별한 사유 없이 본 협약 관련 사업 추진 진도가 현저히 저조한 때

② 천재지변, 화재, 전화(戰禍), 그 밖의 재해, 심각한 노후화 등으로 강당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

③ 강당이 공용징수 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재개발 사업 내 강제 편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

④ 갑과 을이 기간 만료 전 협약의 해지를 서면으로 상호 동의한 때

제 11 조(손해배상) ① 갑과 을 중 일방이 제10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기간 만료 전 협약을 해지한 경우 상대방은 이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구체적 금액의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를 기준으로 협의하여 정한다.

② 제10조의 사유로 협약이 해지된 경우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.

③ 제2항에 불구하고 갑과 을 일방 또는 쌍방에 귀책사유가 있다면 귀책사유 기관이 재산손실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, 제10조 제4항의 사유로 협약이 해지되고 갑이 재산의 보상금(공용징수, 재개발 등에 따른 보상 재산 일체)을 받는 경우 일정액(리모델링 부분)을 을에게 지급한다.

본 협약이 정당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.

서기 2018년 7월 2일

대구대학교 총장

대구덕희학교장